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회 의견 청취(안)

의안 번호	2577
----------	------

제출연월일 : 2022. 11.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1. 시의회 의견청취 배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원 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바,
-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하남 도시계획시설 현황

- 전체 도시계획시설 현황
 - 하남시 도시관리계획상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총 2,315개소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135개소로 면적은 15,334,764㎡임

구 분	합 계		집행시설		미집행시설	
	개소수	면적(㎡)	개소수	면적(㎡)	개소수	면적(㎡)
합 계	2,315	23,969,491	1,180	8,634,727	1,135	15,334,764
도로	1404	6,944,585	615	3,129,103	789	3,815,482
공원	192	3,089,700	86	2,715,006	106	374,694
녹지	203	670,619	169	614,328	34	56,291
주차장	203	229,504	64	113,514	139	115,990
방재시설	60	9,656,957	16	225,848	44	9,431,109
기타	253	3,378,126	230	1,836,928	23	1,541,198

※ 기개발지 : 감일, 위례, 미사, 풍산, 신장, 현안1,2

※ 공공주택지구 편입된 교산 제외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 미집행시설은 총 1,135개소로 도로, 주차장, 공원이 대부분 차지함

구 분	합 계		10년 미만		10년 이상	
	개소수	면적(㎡)	개소수	면적(㎡)	개소수	면적(㎡)
합 계	1,135	15,334,764	30	47,957	1,105	15,286,807
도 로	789	3,815,482	14	26,619	775	3,788,863
공 원	106	374,694	5	9,466	101	365,228
녹 지	34	56,291	4	4,817	30	51,474
주차장	139	115,990	2	5,426	137	110,564
방재시설	44	9,431,109	-	-	44	9,431,109
기 타	23	1,541,198	5	1,629	18	1,539,569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10년 이상)

-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총 1,105개소로 도로, 주차장, 공원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음

- 우선해제취락 내 미집행시설이 882개소로 가장 많으며 시설 실효일이 2025년, 2026년임

구 분	합 계		우선해제취락		취락지구		그 외 지역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1,105	15,286,807	882	1,206,027	53	61,271	170	14,019,509
도 로	775	3,788,863	635	928,441	32	43,797	108	2,816,625
공 원	101	365,228	92	149,920	5	7,468	4	207,840
녹 지	30	51,474	26	22,375	2	1,460	2	27,639
주차장	137	110,564	128	104,998	9	5,566	-	-
방재시설	44	9,431,109	-	-	-	-	44	9,431,109
기 타	18	1,539,569	1	293	5	2,980	12	1,536,296

3. 단계별집행계획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135개소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4.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③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단계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도시·군계획시설은 이를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